

[별지 제 1호 서식]

박사후연구원 임용계약서

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.)과 {{성명}}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.)직원은 아래의 조건에 의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.

- (임용직급)** “갑”은 “을”을 창신대학교 {{근무처}} 박사후연구원으로 임용한다.
- (임용기간)** “을”의 임용기간은 {{임용시작}}부터 {{임용끝}}까지(1년)로 한다.
- (보수 및 부담금)** 임금은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지급한다.
 - 기본급(년간) : {{기본급}}원
 - 제수당(년간) : 120만원(정액급식비 120만원)
 - 퇴직 총당금 : {{매월 기본급의 1/12을 적립}}
 - 4대 사회보험(사용자 부담금) : {{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에서 예산을 확보}}
 - “을”이 12개월 이상(1년)근무할 경우 1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한다.
 - “을”은 4대 사회보험(국민연금보험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에 가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며, 연구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한다.
- (지급방법 및 시기)** 총 연봉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5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지급)에 “을”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.
- (근무시간 및 휴일)**
 - “을”의 근무시간은 평일 {{근무시작시간}}부터 {{근무종료시간}}까지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.
 - 휴일은 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휴일, 근로자의 날(5월1일)로 한다.
 - 휴무, 휴가, 외출 또는 장시간 출타 시는 소속 부서장의 허락을 받아 실시한다.
- (휴게시간 및 연차유급휴가)**
 - 휴게시간은 12시00분부터 13시00분까지 60분으로 한다.
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.
- (의무)**
 - “을”은 임용기간 중 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으로서 교육관계 법령과 본 대학 법인정관 및 본 대학 제규정을 준수하고, 본 대학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은 임용 시 제출하는 서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“을”이 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.
- (준수)** 본 대학의 설립정신은 기독교교육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“을”은 대학 내에서 기독교 교육에 협력하고, 설립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재계약)** “갑”과 “을”은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계약임용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에 자동해약 되고 사임한다.
- (기타)**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,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“갑”, “을” 각 1통씩 보관한다.

{{계약일}}

“갑” :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

“을” : {{주소}}

{{주소2}}

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(인)

생년월일 : {{생년월일}}

성명 :

(인)